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운영규정	제정일자	2014.8.1
		개정일자	
		페이지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충청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의 기능) 본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SYSTEM :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화,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2. COMPONENT :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인력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특성화 분야 운영
3. LINK : 산학협력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가족회사 지원 및 운영, 기업 밀착형 기술지도 지원 및 운영
4. 사업관리 및 운영

제 2 장 사업단의 구성

제3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교무위원급으로 보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제4조(구성)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현장실습지원센터
2. 산학기술창업교육센터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산학협력 중점교원) ① 사업단에는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두며,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②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사업단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단의 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기타 사업단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단 세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세부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세부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8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비 그리고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사업비 중앙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평가관리지침 및 본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10조(취득자산의 귀속)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기자재, 지식재산권, 수익금,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보칙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3. (효력) 이 규정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